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유아 하차시 통학버스 동승보호자의 인계의무 신설 등〉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8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선미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06. 28.
3. 회부연월일 : 2024. 07. 0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행법에서 위의 상황에서 점멸등 작동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여 영유아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안 제53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안 제53조제1항), 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하여 영유아 하차시 보호자 인계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u>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u>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u>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u>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 <u>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u> ----- ----- ----- <u>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u> ----- ----- ----- <u>. 다만, 위 장치와 표시는 그 외의 경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 ⑦ (생략) <신설>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u>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영유아가 하차하는 때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u>

먼저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어린이’, 6세 미만인 사람을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음¹⁾.

현행법 제53조제1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일 때 “에만” 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조문의 해석상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될 수 있으나,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는 항상(반드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으며, 이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탑승 표시에 대해서도 동일함.

현행법의 입법 취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할 때 ‘반드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게 하고, ‘반드시’ 탑승 표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2. (생략)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 차 (생략)

24. ~ 34. (생략)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생략)

시를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운전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음으로, 동승보호자의 영유아 하차시 보호자 인계의무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탑승할 경우 보호자의 동승을 의무화하고 있고, 동승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하는 때에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며, 운행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와 영유아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승보호자의 의무에 동승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때 학부모 등의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통학버스 하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차량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나 유아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의 어린이·영유아의 보호 문제는 다른 관계 법률에서 규율할 사항인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5